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11. 10.

행정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접수일자 : 2008년 10월 30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08. 11. 6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이항우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·시달되어 용어정비와 단순 조문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을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알기쉬운 용어정비로 “각 호의 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내지”를 “~부터 ~까지”로 변경(안 제7조, 안 제17조, 안 제21조)
-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(안 제8조)
- 용어의 명확화로 “사업용”을 “아파트형공장용”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로 “주거용 부동산”을 “주택”으로 변경(안 제13조)
-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(안 제14조)
-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(안 제16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권오운)

-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단순 조문 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”에 따라 조문내용 중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7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·시달되어 용어 정비와 단순 조문 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알기 쉬운 용어정비 : “각 호의 1” →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, “내지” → “~부터~까지” (안 제7조, 제17조, 제21조)
- 나.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(안 제8조)
- 다. 용어의 명확화 : “사업용” → “아파트형공장용” (안 제12조)
- 라.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: “주거용 부동산” → “주택” (안 제13조)
- 마.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(안 제14조)
- 바.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 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3조
 -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1131('08.9.24), 서울시 세제과-13751('08.9.26)
구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 공문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“별첨”
 - (2) 입법예고('08.10.8.~'08.10.28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**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7조 내지 제9조”를 “**제7조부터 제9조까지**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**”로,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”을 “**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**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”를 “**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1호**”로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**”로,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”을 “**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”를 “**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1호**”로 한다.

제12조 본문 중 “사업용”을 “**아파트형공장용**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주거용 부동산”을 “**주택**”으로 하고, “각 호의 1”을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**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”를 “**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**”로 한다.

제16조 제목 중 “유통산업지원”을 “물류산업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”를 “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제1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”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